

제51조(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계약기간) ① 이용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대상자가 병원 장기입원 또는 시설입소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대상자가 종사자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종사자가 육체적, 신체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가 발생 시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이용료 등 비용 변경이 있을 경우, 급여변경요청서(변경계약서)를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작성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지에 변경 사유를 작성할 수 도 있다.

제53조(계약준수사항)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

-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계약서는 작성 날인 한 후 각 한 부씩 보관한다.
-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대상으로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육체적, 신체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 시에는 센터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매월 근무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여 대상자 가정에 제공하고 관리대장에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단, 수기작성 발생 시 주 1회 제공한다)

제54조(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 5등급 : 재가급여 (시설 급여일 경우 시설도 이용 가능함) 1,2등급은 1시간이상 이용 시 중증수당 2,000원씩 하루 최대 6,000원지급됨(일1회/수급자1인, 본인부담없음)
-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 (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하여 방문할 때 보호자나 가족에게 전달한다.
- 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⑥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⑦ 240분 초과로 근무할 시에는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270분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 ⑧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 ⑨ 평일 22시 이후 및 일요일은 30%가산, 공휴일은 50% 가산되어 이용료가 발생한다.

〈방문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서비스 시간	재가급여 총 비용	본인부담금(이용료)		
		일반(15%)	감경(9%)	감경(6%)
30분	17,450원	2,618원	1,571원	1,047원
60분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90분	34,120원	5,118원	3,071원	2,047원
120분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50분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180분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10분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240분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방문목욕〉

‘26년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88,990원
차량이용(가정 내)	80,230원
차량 미 이용	50,100원

제55조(이용료수납) ① 본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를 부담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를 부담한다.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경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한다.(9%,6%,0%)

③ 이용료 수납은 익월 말까지 센터의 지정 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정한다.

④ 비용면제 및 감경 대상자라도 식대, 이미용료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1. 센터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수납 후 이용 불가 승인 통보

를 하였을 경우

2. 종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더는 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때

⑥ 상기 ④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신청 시 작성한 구비서류에 거짓 사항이 판명되거나 그로 인해 이용자의 센터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나 종사자의 지도에 불응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해 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56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방법 및 절차는 상호협의를 한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보험율에 따른 감경비율 변경 시에는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이용 비용 기준 :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등급 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이용자 또는 국기법 수급권자의 감경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처리한다.

3. 센터는 물가 변동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제57조(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6.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58조(신원 인수인의 변경)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신원 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보호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9조(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 “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 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을”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의 제공 의무
5. 기타 “을”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표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의무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 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이용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60조(계약의 해제) 계약 종결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에 건강 진단 결과 전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시설입소 및 병원입원)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과출부의 의미나 본인부담금 대납요구등)
6.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인 경우